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6. 27.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31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 제공의 근거 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- 조례 제명 개정
-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명시(안 제1조)
- 자원봉사자 우대 규정 신설(안 제19조)
- O 다른 조례의 개정: 감면 규정 신설(안 부칙 제2조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(안 부칙 제2조제1항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(안 부칙 제2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(안 부칙 제2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하

여 관내 시설물 및 평생 학습관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.

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.

- 안 제1조(목적)에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명시함.
- 안 제19조(자원봉사자 우대)에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"우수 자원봉사 자증"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.
- 개정안 전체에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띄어쓰기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함.

○ 검토 결과

-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자원봉사자 우대 조항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4 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"우수 자원봉사자증"을 발급하고,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한 것으로 보임.
- 먼저,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%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기에 본 조례의 감면 기준은 이에 부합한다고 여겨짐.
- 한편,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경우 ①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있음.
 - 본 개정안의 감면사항과 관련하여 「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는 것은 정리적인 개정 즉, "기본이 되는 조례나 규칙에서 제도가 신설·변경되는 경우 관련 조례나 규칙을 기본이 되는 조례나 규칙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개정"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, 관련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다수의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우리 구(區)에서도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

기에 해당 위원회와의 사전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, 11개의 자치구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4년 3월 26일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하여 우수지원봉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바 있어 이러한 추세를 따라 장기간 활동한 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349 호

제출연월일: 2024. 6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, 조례명 개정

나.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명시(안 제1조)

다. 자원봉사자 우대 규정 신설(안 제19조)

라. 다른 조례의 개정: 감면 규정 신설(안 부칙 제2조)

- 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(안 부칙 제2조제1항)
- 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(안 부칙 제2조제2항)
- 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(안 부칙 제2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3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4. 25.~5. 16./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す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"를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 원봉사활동 지원 조례"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이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 가 지방자치의 정착·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대가없이"를 "대가 없이"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한다.

제4조 중 "자원봉사진흥"을 "자원봉사 진흥"으로, "강구하여"를 "마련하여"로 한다. 제5조제1항 중 "강구하여"를 "마련하여"로, ""위원회"라"를 ""위원회"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자원봉사관련"을 "자원봉사 관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구청장를"을 "구청장을"로, "구성 한다"를 "구성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위원회"를 "그 밖에 위원회"로, "운영 그 밖에"를 "운영에 관하여"로 한다. 제7조의 제목 "(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"를 "(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센터 장"을 각각 "센터장"으로 하며, 같은항 중 "30일전"을 "30일 전"으로 한다.

제8조제6호 중 "자원 봉사"를 "자원봉사"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센터의조직 및 운영 등)"을 "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센터에는 소장"을 "센터는 센터장"으로, "구성한 사무국을 둔 다"를 "구성한다"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2월말"을 "2월 말"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"자원봉사진흥"을 "자원봉사 진흥"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"(보험가입)"을 "(보험 가입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"공제가입"을 "공제 가입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자원봉사보험"을 "자원봉사보험"을 "자원봉사보험"을 "자원봉사보험"으로, "자원봉사보험"을 "자원봉사보험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자원봉사보험"을 "자원봉사보험"을 "자원봉사보험"을 "자원봉사보험"을 "자원봉사보험"을 "자원봉사보험"을 "지원봉사보험"을 "지원봉사보험"을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공제가입절차"를 "공제 가입 절차"로 한다.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자원봉사자 우대)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 봉사자의 사회적 보상과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자원봉사 참여자

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: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

2.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: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. 이 경우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비고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제25호 및 제26호로 하고, 같은 별표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4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.
-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 자원봉 사자증을 소지한 사람
-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 중 50% 감면의 대상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자

별표 2 중 구비서류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비 서류	1) 감면대상자의 해당증명서 및 신분확인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2)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- 차상위계층 증명서 -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-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지증 - 의상자 증서 또는 증명서 - 한부모가족 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(다문화가족)
구비	-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
十川	
서류	
	- 가족관계증명서(다문화가족)
	- 병역명문가증
	- 우수 자원봉사자증
	-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안 혅 행 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활동지원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 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봉 시 영등포구 지역주민들이 자율 사활동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 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이 자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 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공동체 자치의 정착・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·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-----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자원봉사활동"이란 개인 또 1 -----는 단체가 지역사회 •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----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 2. ~ 4. (생 략) 2. ~ 4. (현행과 같음) 제3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제3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---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 ----- 각 호----. 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15. (생 략)

1. ~ 15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 라 한다)은 <u>자원봉사진흥</u>에 관 한 시책을 <u>강구하여</u>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)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<u>강구하여</u>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
- 1. (생략)
- 2. <u>자원봉사관련</u> 시책의 조정및 협의
- 3. 4. (생략)
- ③위원회는 <u>구청장를</u>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.
- ④<u>위원회</u>의 구성 및 <u>운영 그 밖</u> <u>에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
<u>자원봉사 진흥</u>
<u>마련하여</u>
제5조(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
え) ①
<u>마련하여</u>
"이 이 치"긔.
<u>"위원회"라</u> -
 ②
· 1. (현행과 같음)
2. 자원봉사 관련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을
<u>구성한다</u> .
④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
하여
제7조(세터장의 성임방법 및 적

- 차) ①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 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구청장 이 선임하며. 그 밖의 경우는 공 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.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 자를 선임토록 한다.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제8조(센터의 사업) 센터는 다음
 - 1. ~ 5. (생 략)
- 6.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 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(센터의조직 및 운영 등) ①
 - ~ ③ (생 략)
 -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 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 성한 사무국을 둔다.
 - ⑤ ~ ⑧ (생 략)
- 제11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 (생략)
 -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·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u>차)</u> ① <u>센터장</u>
 ② 센터장
<u>30일 전</u>
제8조(센터의 사업)
1. ~ 5. (현행과 같음)
6 <u>자원봉사</u> -
제9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센터는 센터장
<u>7</u>
<u>성한다</u> .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
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2월 말</u>

- ③ (생 략)
 제3장 <u>자원봉사진흥</u>
 제17조<u>(보험가입)</u> ① (생 략)
 - ②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<u>공제가입</u>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 - 1.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<u>자</u>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<u>자</u>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2. (생략)
 - 3. 구청장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 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③그 밖에 보험 또는 <u>공제가입</u>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제3장 <u>자원봉사 진흥</u>
제17조 <u>(보험 가입)</u> ① (현행과 같
<u></u>
②
2
공제 가입
1
<u>자</u>
원봉사 보험
<u> </u>
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
<u>을 신청하여야 한다</u> .
2. (현행과 같음)
3
자원봉사 보험
<u> </u>
<u>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</u>
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③ <u>공제 가입</u>
절차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제19조(자원봉사자 우대) 구청장
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
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사회

- 세19조(자원봉사자 우대) 구청장 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 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사회 적 보상과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자원봉사 참여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 공할 수 있다.
 - 1.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: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
- 2.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: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. 이 경우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은 관련 조례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